

정책자료 2008-08-4

2008년 기초보장 모니터링 포럼 IV

- 성별영향평가 -

한 국 보 건 사 회 연 구 원
기초보장·자활정책평가센터

2008년 기초보장 모니터링 포럼Ⅳ

-성별영향평가-

정책자료 2008-08-4

발행일 2008년 12월
저자 이태진 외
발행인 김용하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록 제8-142호(94.7.1)
주소 (122-705)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68
전화 02-380-8000(대표)
팩스 02-352-9129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가격 5,000원
인쇄처 대명기획(02-2263-1292)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ISBN 978-89-8187-561-9 93330

편저

이태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평가센터장

최연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전세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목 차

I. 개요	1
1. 기초보장평가센터 소개	1
2. 사업의 개요: 기초보장 모니터링 포럼 운영	1
3. 자료의 개요	3
II. 주요 내용	7
1. 성별영향평가 개요	7
2. 주요 내용	10

1. 기초보장평가센터 소개

□ 설립목적

- 기초보장·자활정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전 국민에 대한 기초보장과 자활정책의 역동성을 도모하고, 기초보장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에 기여하기 위해 2001년 12월 설립

□ 사업내용

- 기초보장 및 자활사업의 효율적 제도운영과 예산운용을 위한 모니터링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 빈곤과 공공부조 제도·정책에 관한 심층 연구 및 빈곤통계 연보 발간
- 빈곤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토론 및 대안 모색을 위한 포럼 운영
- 빈곤과 공공부조 제도 및 관련정책에 대한 심층 연구를 진행

2. 사업의 개요: 기초보장 모니터링 포럼 운영

가. 사업의 목적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중심으로 심층적 인터뷰, 자문, 토론을 위한 평가단 및 포럼을 구성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신뢰성 및 건전성 제고를 위해 필수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의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사업을 운영함.

2 2008년 기초보장 모니터링 포럼 IV: 성별영향평가

- 이에 시군구·읍면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중심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심층적이고 실증적인 모니터링을 위하여 현장실무자와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기초보장제도 관련 중심의 업무수행 체계와 관련된 개선사항 도출, 모니터링 계획 및 실행결과 등을 논의
 - 지속적인 현장실무자의 정책 의견을 반영하여 제도의 신뢰성 및 건전성 제고

나. 추진 방법 및 과정

- 시군구 및 읍면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중심으로 '기초보장제도 모니터링 전문위원' 위촉
 - 52명의 모니터링 전문위원(시도별 3~4인)을 선정하고 소속 지자체 평가에 가점 부여
 - 기초보장 모니터링 전문위원의 특성
 - 52명의 모니터링 전문위원은 남성 19명, 여성 33명으로 구성
 - 이중 시군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29명, 읍면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23명임.
 - 각각의 업무를 살펴보면, 18명의 모니터링 전문위원이 통합조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34명은 기초생활보장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지역 분포를 살펴보면 서울·경인지역 13명, 경상지역 13명, 강원·충청지역 13명, 전라·제주지역 13명으로 구성됨.
 - 정기적인 포럼 운영 및 Workshop 개최
 - 제도 평가지표별 쟁점을 중심으로 포럼 개최 (분기별 1회)
 - 시군구·읍면동 기초보장제도 모니터링 평가단을 중심으로 네트워크 구축

- 기초보장제도 운영 및 개선 관련 모니터링 연구수행을 위한 의견수렴을 위한 Workshop 개최를 통해 제도에 대한 평가 및 개선사항 제안 (1회)

□ 모니터링 포럼의 주제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근로능력 판정 및 판정 이후 확인 및 점검(I)
- 기초생활수급자의 자활참여 및 탈수급 방안 모색, 부정수급 제재 방안(II)
- 추정소득 부과 및 보육료 지원에 따른 행정처리 등 문제 진단, 해결 방안(III)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별영향평가(IV)

다. 추진결과 및 활용

- 기초보장평가센터와 현장실무자의 협력관계 구축을 위하여 추진된 모니터링 포럼의 성과를 정책자료집으로 발간
- 시군구별 기초보장제도 모니터링 전문위원을 중심으로 네트워크 구축
 - 각 시군구별 통합조사팀 및 모니터링 담당 공무원을 중심으로 모니터링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 기초보장제도 운영 및 개선 관련 모니터링 연구수행을 위한 의견수렴 대상으로 활용

3. 자료의 개요

가. 자료의 특성

- 본 자료는 2008년 여성부에서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수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

4 2008년 기초보장 모니터링 포럼 IV: 성별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의 일환으로, 본원 기초보장 모니터링 전문위원을 대상으로 “기초보장제도의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포럼을 진행하여 논의된 내용을 구성하였음.

나. 자료작성 방법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별영향평가와 관련된 모니터링 포럼 자료
 -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총 16명의 기초보장 모니터링 전문위원이 모니터링한 내용을 분석함.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대상으로 간담회 및 워크숍을 실시하여 포커스 그룹 인터뷰(Focused Group Interview)를 진행하여 의견을 수렴함.

다. 응답자 특성

- 총 16명의 응답자의 지역은 수도권 지역 3명, 대도시 3명, 중소도시 3명, 농어촌 지역 7명으로 분포되어 있음.
- 세부 지역 단위는 시군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12명, 읍면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4명으로 분포되어 있음.
- 담당업무는 기초생활보장 업무를 담당자는 8명, 통합조사 업무 담당자는 8명으로 분포되어 있음.

사례 번호	지역	시군구/읍면동	업무
1	수도권	읍면동	기초생활보장
2	수도권	시군구	통합조사
3	수도권	시군구	기초생활보장

4	대도시	시군구	통합조사
5	대도시	시군구	통합조사
6	대도시	시군구	기초생활보장
7	중소도시	읍면동	기초생활보장
8	중소도시	시군구	통합조사
9	중소도시	시군구	통합조사
10	농어촌	시군구	통합조사
11	농어촌	시군구	통합조사
12	농어촌	시군구	통합조사
13	농어촌	시군구	기초생활보장
14	농어촌	읍면동	기초생활보장
15	농어촌	읍면동	기초생활보장
16	농어촌	시군구	기초생활보장

라. 질문의 구성

- 성 인지적 관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실태(사각지대) 및 예산현황, 만족도 등에 대한 젠더 이슈
- 성인지적 관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법령, 지침, 업무수행체계 등과 관련하여 내포되어 있는 차별적 요소를 문제점으로 제시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방안 제언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정책기획서, 결과보고서에 인적 통계 성별구분 여부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여성과 남성의 서로 다른 현실과 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반영하는지 여부
- 정책대안 마련 시 성별을 주요 변수로 고려하는지 여부

6 2008년 기초보장 모니터링 포럼 IV: 성별영향평가

- 정책홍보 방식에 있어 특정한 성별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정책정보를 접하는데 유리 혹은 불리한지 여부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제도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 성별 차이가 있을 때 그 원인 파악 및 성공 사례 확인

마. 자료의 의의와 활용도

-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통상적인 평가들에는 담겨지기 어려운 제도시행 현장의 상황을 다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써의 의의를 가지며, 국민기초생활제도의 모니터링 및 평가의 질적인 지평과 깊이를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하여 본 자료는 다음과 같이 활용될 수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모니터링 및 평가를 위한 질적조사의 보완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연구자 및 정책입안자들에게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함으로써 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정책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평가와 그 개선방안을 위한 참고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음.
 - 제도의 일선 담당자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의 제도에 대한 인식, 수급자에 대한 태도, 업무에 대한 태도 등을 파악할 수 있어 제도 시행주체의 인식 및 태도가 제도운영에 미치는 영향 등의 연구에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

II 주요 내용

1. 성별영향평가 개요

가. 목적

- 성별영향평가는 1995년 제4차 UN 세계여성대회를 통해 본격적으로 논의되었으며, 동 회의에서 채택된 행동강령에서는 여성과 남성에 대한 정책결정의 영향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는 노력의 필요성이 명시되었음.
 - 현재 영국, 캐나다 등을 비롯한 약 40여 개국 및 UN, ILO 등 국제기구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성별영향평가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 여성발전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당해 정책이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평가하여야 한다"(제10조제1항)라는 근거 조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Gender impact assessment) 제도를 도입하여 2004년부터 실시하고 있음.
 -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정책 선정기준으로 '관련통계상 정책 수혜의 성별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정책 또는 향후 성별격차 발생 우려가 있는 정책', '수혜대상 범위가 넓으며 파급효과가 큰 정책', '여성권한척도(GEM) 등 양성평등 관련 국제지표에 영향을 주는 정책', '예산규모가 크며 국민적 관심사항이 되고 있는 정책' 등을 제시하고 있음.

8 2008년 기초보장 모니터링 포럼 IV: 성별영향평가

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별영향평가 필요성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공공부조 방식으로 운영되는 최종적 사회안전망으로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복지정책으로 우선 평가대상 예시에 포함됨.
- 우리나라의 각종 사회복지정책 가운데 예산규모와 비중이 매우 크고 2000년도 도입 이후, 전 국민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최후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특히, 개별급여체계로의 급여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향후 중장기적으로 제도 개선이 논의될 예정으로, 이러한 과정에서 성별영향평가 결과가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심층 분석이 필수적임.
- 따라서, 국민의 사회권 보장과 관련하여 일상적인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연구를 통해 수급실태와 욕구, 제도의 효과를 분석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정책개선에 반영해야 함.

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별영향평가 지표

구 분	평가지표	세부 평가항목
공통 사항	① 성별통계의 생산 및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인적 통계작성 과정에서 성별(남/여, 남성 가구주/여성가구주, 부자/모자가구 등)을 구분하고 있는가?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정책기획서, 결과보고서에 인적 통계를 성별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는가? (*기획, 통계작성, 표본추출, 조사표, 조사/분석, 공표에서 성인지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가?)
<1단계> 정책입안	② 정책의 성별 관련성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여성과 남성의 서로 다른 현실과 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반영하고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욕구를 파악하여 반영한 내용은 무엇인가? - 시민단체 의견수렴, 통계상의 만족도 차이 등에 대한 확인여부?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법령, 지침, 기본계획 등에 특정 성별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으로 한 별도의 항목이 있는가? 부처 자체평가 및 외부기관 정책평가 등을 통한 정책대안 마련 시 성별을 주요 변수로 고려하는가?
	③ 정책결정과정의 양성평등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정책결정 과정에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문, 심의, 의결 등과 관련된 위원회의 성별 구성비율이 어떠한가?, 여성위원 비율이 최소 30% 이상을 만족하는가? 위원회가 없는 경우, 자문을 위하여 양성 평등한 전문가그룹(성별 구성비율 확인)을 운영하였는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부처(시군구)(사회복지전담)공무원 성별 구성비율은?
	④ 예산편성의 양성평등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예산편성 시 성별 인원과 성별 정책요구에 따라 예산이 책정되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산규모 총액 및 항목별로 성별편차가 존재하는가? 성별 균등배분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평가결과를 정책대안에 반영하고 있는가? 정책 수혜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집단을 위한 별도의 특별예산이 편성되어 있는가?
<2단계> 정책 집행	⑤ 정책서비스 전달방식의 양성평등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정책서비스를 전달하는 시군구/읍면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성별 구성비율은? 서비스 전달방식과 경로에 따라 특정한 성별이 기초생활보장수급을 받는데 더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은가?
	⑥ 정책홍보방식의 양성평등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홍보 방식에 있어 특정한 성별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정책정보를 접하는데 더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은가?
<3단계> 정책 평가	⑦ 정책수혜 (예산배분 포함) 양성평등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성별 구성비율이 정책대상 모집단과 비교하여 형평한가? 국민기초생활보장 관련 예산 지원금의 규모에 있어서 성별에 따라 편차가 존재하지 않는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정책 만족도가 성별에 따라 동등하게 나타나는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제도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 성별 차이가 있을 때 그 원인을 파악하고 있는가? (*수급자의 성별 구성비율 변동과 관련된 상황 및 요인)
	⑧ 정책영향의 양성평등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정책집행 결과가 양성평등과 여성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등의 향상에 기여하는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정책집행의 결과가 향후 관련 사회복지정책의 양성평등성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가?
	⑨ 평가결과 및 정책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정책평가 결과 성별 격차가 존재하는 경우, 형평성 증진을 위한 정책개선 대안이 충분히 제시되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령, 지침 개선방안, 예산요구안, 기타 개선방안 등

10 2008년 기초보장 모니터링 포럼 IV: 성별영향평가

2. 주요 내용

가. 성 인지적 관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실태(사각지대) 및 예산 현황, 만족도 등에 대한 젠더 이슈를 제시

□ #7, 중소도시, 읍면동

- 젠더 이슈

- 제주도는 노인인구에 대한 문제점이 많음
- 여성은 70세까지 근로능력 유지(남성은 대부분 60세 이후 근로능력 상실)
- 보이지 않는 소득 부문(텃밭 등의 일일 고용 등)에서 남성이 상대적으로 빈곤
- 이혼가정의 남성 노인인 경우 호적 위주의 부양의무자 관계를 통해 불이익에 처하고 있음.
- 조이혼 가정의 높은 비율 : 1,000명당 3명(전국 2~3위)
- 경제능력이 있는 모자가정은 급여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며 부자가정은 세대주가 대부분 근로능력이 미비하여 급여가 상대적으로 높음
- 후원자는 부자가정보다는 모자가정을 선호

□ #10, 농어촌, 시군구

- 성인지적 관점에서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의 수급실태를 살펴보면, 수급자(세대원) 남녀 비율(남 43%, 여 57%)은 여성이 다소 높음
 - 농촌 지역으로 고령화와 고령에 따른 여성 비율 ↑
 - 결혼가정 및 장애가구 중 노동능력과 저소득으로 수급자 여성 비율 ↑
 - 초기상담 및 기초수급자 신청자가 대부분 여성이 70% 이상

□ #11, 농어촌, 시군구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수급자 방문시 홀로 거주하는 남성의 집을 방문하는 것이 꺼려지는 측면이 있으며, 여성자원봉사자가 남성의 집에 방문하는 경우 우려되는 경우가 있음.
- 수급자 관리시에도 남성 노인의 경우 반찬, 빨래 등 가사지원 희망
 - 여성의 경우는 학비, 자녀양육 관련 학습지 지원
 - 남성의 경우는 일자리 희망

□ #12, 농어촌, 시군구

- 성 인지적 관점에서 남성보다 여성들이 빈곤, 취업 등 경제적, 사회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전제하에 최근 이혼, 사별, 별거 등으로 여성가구주의 비율 증가
- 영광군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을 볼 때 전체 2687세대 중 모자가족 78세대, 부자가족 18세대로 여성가구주가 남성가구주에 비해 빈곤에 처할 확률이 더 높음
 - 특히 모자가족의 여성가구주와 독거 여성노인들은 빈곤에 처할 위험이 가장 높은 집단에 속하나 성차별적 노동시장으로 인해 일자리 취득이 어려우며 자활사업참여자 중 대부분이 여성으로 자녀양육, 집안일로 인해 자활성공이 어려움
- 개선 방안
 - 개별수급권 확보, 여성직업능력 개발 및 고용촉진, 성차별 개선 효과 평가, 예산 확보 등

□ #13, 농어촌, 시군구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실태를 파악하여 보면 ○○군의 경우 60%이상이

12 2008년 기초보장 모니터링 포럼 IV: 성별영향평가

여성이며, 남성의 경우는 장애, 폐질, 사업실패 등으로 인한 신용불량자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실정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임

- 전형적인 농촌으로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이미 넘어선 실정이며 농사경작이외 별다른 소득원이 없으며, 노인들 중 국민연금 수혜자가 그다지 많지 않으며, 기초노령연금수령, 자녀들의 부정기적 도움으로 생활을 해나가고 있으나 많은 수가 사별 등으로 인하여 홀로 생활하는 노인가구 많음
- 또한 할머니들 보다는 할아버지들이 홀로 생활하게 되는 경우 식사준비, 집안 청소, 빨래 등을 손수 해결해야 하는 문제에 봉착을 하고 있는 실정임
 - 가사도우미나 바우처 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으나 1주일에 1회 정도 방문
 - 약간의 집안청소, 안부 살피기 등의 복지수혜를 받고 있으나 행정기관에서 모든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실질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잘 하고 있는지 파악 및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며 또한 참여자들의 99%가 여성들이라 혼자서 복지서비스를 참여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며 2인1조로 방문하고 있음
- 예산을 살펴보면 여성 및 남성의 구분이 없으며 지방재정이 열악하여 국비 보조사업의 10%를 겨우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며, 기초생활보장 자체 사업 예산은 전무한 실정임
- 수급자들의 대부분이 현재의 지원에 만족해하지 않고 더 많은 복지수혜를 요구하고 있으며 오히려 본인들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이 허약하다는 증거로 더 많은 복지급여의 증가를 당연시 하고 있으며, 노동에 거의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는 추세이며, 여성보다는 남성들이 더 당연시 하고 있어 애로가 많음

□ #14, 농어촌, 읍면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현 수급실태를 살펴보면 가족구조의 변화(이혼율, 미혼모의 증가 등) 및 고령기 여성의 증가로 빈곤의 여성화가 심해져 전체 수급자 중 남성가구주의 경우보다 여성가구주의 경우가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추세이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여성 취약계층이 늘고 있음
- 여성가구주의 경우가 남성가구주의 경우보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낮음(불만을 토로하는 수급자를 보면 대부분이 여성수급자임)

□ #6, 대도시, 시군구

- 기초수급자 수급실태를 파악함에 있어 모·부자세대를 구분하기는 하지만, 가구의 남녀 구분은 하지 않음
- 성별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는 않으나, 여성가구주가 많은 편으로 예산 집행 또한 여성이 더 많다고 할 수 있음

□ #3, 수도권, 시군구

- 성인지적 관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아들과 딸의 부양의무기준이 다른 것이나 사회적 활동능력을 고려한 남녀간 사회적 인식에 차이가 발생함.
 -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아들의 부양의무기준을 완화하고 딸은 강화하되 재산형성의 기여도를 고려해야 할 것임. 아무리 부자라도 기여한 부분이 전혀 없다면 재산에 대한 사용권한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

14 2008년 기초보장 모니터링 포럼 IV: 성별영향평가

나. 성인지적 관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법령, 지침, 업무수행체계 등과 관련하여 내포되어 있는 차별적 요소(구체적 사례를 간략히 제시)를 문제점으로 제시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방안 제언

□ #7, 중소도시, 읍면동

- 법령

- 부양의무자에 대한 기준을 새롭게 정비해야 함
- ex) 직계가족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남성은 여성에 비해 부양의무자에 대한 구속력이 강함
- 최저생계비 산정시 여성과 남성의 차이에 대한 금액 조정이 필요함
- ex) 생리대의 경우 생필품으로 인정되나 여성과 남성에게 지원되는 사항으로는 차액이 없는바 여성에게는 추가적 부담 요인

- 지침

- 지방생활보장위원회 구성시 여성비율 30%까지 확대¹⁾
- '남·여 어느 한쪽의 성비율이 70%보다 높지 않아야 한다'로 수정
- 자활수급자(여성)에 대해 생리휴가를 유급 휴가로 인정(일급의 50%~ 60%)

- 업무수행 체계

- 2007년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면서 복지통합조사계가 각 시·군·구별로 신설됨
- 조사에 필요한 인력이 구성되지 않아 읍·면·동의 담당자들이 최초 조사를 하고 있음
- 최초 조사를 할 때 담당자 1인이 함으로써 신청인에 대한 기본 자료를 확

1) 보건복지가족부(2008), 『200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p.180.

보호기 힘들어 여성의 경우 위협에 노출되어 있음

- 통합조사계를 통하여 조사를 하는 경우 2~3인이 한 조를 이루어 조사단을 구성할 경우 위협과 위기상황 대처시 안전을 기할 수 있음

- 사회복지전문요원 임용시

- '남·여 어느 한쪽의 성비율이 70%보다 높지 않아야 한다'로 수정
- 타 직렬에 비해 성비의 불균형이 심함

□ #10, 농어촌, 시군구

- 가정해체 방지 등을 위한 별도가구 인정 특례: 모자가정 인정(지침 8~11)

- ③ 출가한 딸 또는 이혼·사별한 딸(자녀가 있는 미혼여성 포함, 다만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의 집에 거주하는 친정부모
- ⑦ 친정부모의 집에 거주하는 모자가정으로서 모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여성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
 - 희귀·난치성 질환자인 배우자를 가진 여성
 - 미혼여성(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제외),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여성
 - 배우자의 장기복역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여성
- ⑧ 친정부모의 집에 거주하는 배우자와 이혼·사별한 딸(다만, 자녀가 없고 본인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이거나 만성·희귀난치성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 치료·요양·재활을 요하는 경우에 한함)
- ⑨ 친정부모의 집에 거주하면서 친정 부모로부터 직접 부양을 받는 출가한

16 2008년 기초보장 모니터링 포럼 IV: 성별영향평가

딸의 가구(다만 출가한 딸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이거나 딸의 가구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근로능력자가 전혀 없는 경우에 한함)

- 부양의무자 조사: 부양능력의 확인(지침 92)
 - 출가한 딸 등의 가구는 소득만 조사(재산소득 파악 철저). 소득이 부양능력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모두 부양능력미약자로 봄)
 - 실제 수급자 조사시 부양의무자의 이전 소득액은 출가한 딸로부터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경우 다수
 - 출가한 딸의 소득으로만 수급자 선정은 아들과 비례해 부적절함.
 - 수십억 원대 재산소유, 수급자 근처 토지소유, 수급자 재산증여, 상속사례 배우자의 장기복역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여성
- 지역내 사회복지사 남녀 차별 부문
 - 지방(군단위)으로 사회복지사 비율이 현저히 낮음(25.8%)
 - 승진 및 인사, 업무분장에 따른 문제는 현재 없음

□ #11, 농어촌, 시군구

- 부양의무자 조사시 아들(40%)과 딸(15%)의 부양비 부과율 상이함
- 딸은 출가를 하였거나 하지 않았어도 부양의무가 없다고 호소하는 수급권자의 의식에 문제가 있음.

□ #1, 중소도시, 읍면동

- 부양의무자 능력에서 기혼자인 아들과 딸의 부양능력기준의 큰 차이
 - 우리나라는 남아선호와 아들이 대를 잇고 부모를 봉양한다는 전통적 가치관으로 인해 현재 자녀의 부양능력을 적용할 때 기혼자인 아들과 딸의 부

양능력 기준이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

- 아들의 경우 소득, 재산 모두 적용하여 최저생계비 130% 차감한 금액 중 40%를 기혼자의 딸의 경우는 15%를 적용, 재산은 보지 않음. 과거에는 주택의 경우 가장인 남편으로 대부분 명의를 취득했으나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소득활동과 함께 재산형성에도 기여하여 공동명의로 증가하고 있어 재산에 있어 권리를 갖고 있음
 - 예를 들어 살펴보면, A노인 부부 가구와 B 노인 부부 가구가 수급자를 신청함. A 노인부부는 아들이 있는데 4인 가구이며 아들 혼자 250만원의 소득과 1억5천 만 원 전세를 살고 있음. B노인 부부는 딸이 있는데 맞벌이로 450만원 소득과 2억의 자가를 소유하고 있음
 - 결과는 A가구는 수급자 책정제외이며 B가구는 부양비는 산정될지라도(시부모가 같은 주소에 있으면 부양능력 제외) 수급자로 책정 가능하며 이로 인한 의료, 수당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짐
 - A가구는 아들을 가졌다고 탈락을 했는데 자기 아들보다 거의 배에 가까운 소득을 버는 딸이 이것저것 챙겨줌에도 B가구는 수급자 책정까지 되었으니 형평성에 불만을 가질 수 있음. 또한 아들이 부모를 모시고 살 경우 소득이 있으면 수급자 책정제외지만 기혼자인 딸이 모시고 살 경우 친정부모는 별도가구로 책정 가능함.
- 이제는 맞벌이의 증가로 여성의 경우 본인의 소득 및 재산에 대한 권리행사가 강조됨에 따라 기혼인 딸과 아들의 부양능력의 차이를 좁혀야 아들의 부양능력 탈락한 A 가구처럼 상대적 박탈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할 것임.
 - 또한 재산 제외라는 항목으로 금융권 재산이 발생한 딸의 가구가 법을 악용하지 않도록 처분이 용이한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기준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자활프로그램, 교육프로그램 등 주로 여성참여자 위주의 프로그램

18 2008년 기초보장 모니터링 포럼 IV: 성별영향평가

- 자활의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청소, 간병, 의류제작, 요리 등으로 여성참여 프로그램 위주이며 남성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한되어 있음.
 - 취업을 위한 프로그램도 미용 자격, 제과제빵 등 여성이나 젊은 사람들 프로그램 위주로 수급자 구성원 중 40-50대의 남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제한되어 있음.
 - 도배, 보일러수리 등 40-50대 남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자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함.
- 사각지대의 부자가정
- 실질적으로 모자가정이 부자가정보다 많은 것도 있지만 부자가정의 경우 남성의 경제력으로 인해 한부모 가정으로 지원받기 힘들고 어려운 부자가정이라고 해도 남성으로서의 수치심 등으로 보호를 거부 하거나 이웃들과의 단절로 인해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가 많음
 - 또한 모자가정보다 경제활동은 왕성할 수 있으나 아동 심리상태를 보면 부자가정보다 모자가정 아동들이 더 안정적이며 양호한 양육 상태를 볼 수 있기에 모자가정의 경우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지만 저소득 부자가정의 경우 경제적 지원 외 심리적지지 및 급식지원 등 사회적 서비스 및 지원이 필요함

□ #12, 농어촌, 시군구

- 부양의무자 기준 중 '출가한 딸 재산기준 없음'이란 항목은 형평성에 어긋남
- 부양비 비율의 차이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인식에 대한 반영으로 이해되나, 그렇다고 해서 재산상의 기준차이는 인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 남 할당제 도입 : 최근 공무원 합격 성별 비율의 차이가 점점 커지고 있음
- 특히 사회복지(영광군 전체 48명중 남자 11명 여자 37명)부문은 차이가 큰

편입

- 성비가 극단적으로 편중될 경우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어려운 점이 발생
- 출산 대체근무자 채용: 출산휴가 3개월은 대체근로자가 채용되나, 이후 육아휴직시 채용을 하지 않고 있음
- 모성보호, 출산장려 등을 위해서는 위의 제도 도입 필요함

□ #8, 중소도시, 시군구

- 사회복지직 여성공무원 출산에 따른 전문적 대체인력 부족
 - 진주시 구조를 보면 사회복지직 전체 81명중 여성공무원이 60명, 남성공무원이 21명인데 그중 수급자를 직접관리하고 지원하는 읍면동 근무자가 49명인 실정으로 사회복지직 공무원 중 여성의 비율이 현저히 높음
 - 연령이 비슷하고 결혼시기 또한 거의 유사하여 현재 출산휴가 3명, 휴직3명에 달해 사회복지직이 2명이 근무하는 곳에서는 업무를 추진하는데 어려움 발생
 - 이런 문제점 등을 안고 있는 자치단체에서 매년 초에 출산휴가예정자들의 실태를 파악해 정확한 인원이 산출되면 예산과 교육인력을 투입해서 대체인력을 차출해 사전에 전산교육과 기본적인 장비활용능력을 배양시켜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안 필요
- 부양의무자 기준과 법의 한계
 - 75세의 독거노인인 ○○시 ○○동 소재 ○○○씨는 슬하에 1남1녀를 두고 있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정부지원을 받아 왔으나 최근 전산자료 확인결과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있음으로 확인되어 보장중지 처리됨.
 - 수급자의 생활실태를 살펴보면 부양의무자인 딸은 부산에서 남편과 함께 직장을 다니며 왕성한 사회생활을 하고 있지만 시모를 부양하는 관계로

‘부양능력 없음’으로 처리를 하였지만 문제는 미혼인 아들인 ○○○씨가 사법고시에 합격되어 사법연수원에서 연수를 받으며 월150만의 소득이 있어 수급자인 모친이 탈락되었는데 탈락된 이후 9월 말에 ○○○씨가 결혼을 하면서 처가댁에 주민등록을 전입하고는 처가부모를 부양한다며 엄마를 부양할 수 없다고 하며 동사무소 복지담당자에게 정부에서 보호해 줄 것을 요구해 논란 끝에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다시 신청서를 가져가 곧 조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 이런 경우 부양의무자인 아들이 사법고시가 되었다는 사실을 조그만 도시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부유한 가정의 며느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모가 최저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수급자가 될 수 있는지 의문임.
- 차후 이러한 문제가 없도록 지침에 명확한 규정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 사례에 대해 다음과 같은 규정을 논의해 주길 바랍
- 외아들인 부양의무자가 부유한 처가댁에 살아도 부양능력 없음으로 처리해야 하는가?
- 주민등록상 주소만 등재해도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가?

□ #13, 농어촌, 시군구

-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지침에 의거, 아들의 경우 소득, 재산을 고려, 딸의 경우 소득만을 고려하여 부양능력 유무를 판정하고 있는 자체가 성인지적 관점에서 보면 차별적인 요소가 존재함.
- 예) 딸의 경우 재산이 몇 십 억이 되어도 소득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부양능력이 없어 수급자 선정이 가능하고, 아들의 경우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이나 재산이 1억 정도를 가지고 있어 부양능력이 있는 걸로 판정되어 정작 도움이 필요로 하는 세대가 선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

- 개선방안
 - 딸의 경우도 재산이 몇 억 이상일 경우 소득과 재산기준을 동시 적용하여 부양능력을 판정하게 될 경우 아들과 선정기준에서 성인지적 관점에서 볼 때 차별적인 요소가 많이 해결되리라 사료됨

□ #2, 수도권, 시군구

- “200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지침 상 차별적 요소가 존재함.
- p.10~11의 별도가구 인정 특례의 ⑦⑧⑨호의 친정부모와 거주하는 출가한 딸 및 이혼 사별한 딸의 경우 조건에 맞는 사유가 있으면 별도가구 인정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나 부모와 거주하는 동등한 조건의 아들에 대하여 언급이 없음
 - 2008년까지 호적등본이 있어 부계혈통을 중시하는 사회적 편견으로 가능할지 모르나 2009년부터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개편되는 등 사회변화에 적용할 수 있도록 아들도 별도가구 특례에 포함하든지 딸도 아들과 같이 별도가구 인정 특례적용을 없애야 할 것임.
 -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법정급여를 지원받는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남성가구주보다 여성가구주가 생계를 책임지는 것이 더 힘들다는 편견이 있으나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일정한 직업이 없이 한부모가족이 된 남성가구주는 여성가구주보다 근로할 수 있는 여건 및 기회가 부족한 현실임을 느끼고 있음
- 부양의무자의 부양비율에 있어서도 출가한 딸과 아들의 차이가 있고 재산적용 여부도 차이가 있으나 아들과 딸이 동등하게 개선되어야 하며 부양비 적용함에 있어 부양비율을 동등하게 하고 부양비율을 낮추어야 하고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수급신청자의 직계손속인 자녀의 소득만을 산정함이 어떠한지 생각됨

22 2008년 기초보장 모니터링 포럼 IV: 성별영향평가

□ #14, 농어촌, 읍면동

- 가족구조의 변화(이혼율, 미혼모의 증가 등) 및 고령기 여성의 증가로 빈곤의 여성화가 심해지면서 여성가구주의 수급실태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수급자로 보호를 받는 조건부수급자 역시 여성이 더 많은 편임.
- 그러나 개인여건(자녀양육 등)이나 한정되어 있는 자활사업 종류로 조건이행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임.
 - 사례) 수급자 : 김○○(여, 35세) 가족사항 : 1남 가구유형 : 모자가족(이혼)
자활지원계획수립 : 미취학자녀인 아들을 보육시설에 보내고 있어 조건부과를 하였으나 처음에는 아들이 보육시설인 어린이집에 갔다 2시면 집으로 돌아온다며 자활사업 참여의 어려움을 호소함. 이에 시간 연장 보육시설로 옮기고 자활사업에 참여를 하였으나 아들의 잦은 병치레 및 출퇴근의 어려움으로 결국 아들을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고 개인여건으로 인한 자활사업 참여를 중단함.
- 개선방안
- 첫째, 개인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어야 할 것임
 - 대부분의 근로능력이 있는 여성가구주의 경우 가사 및 양육으로 근로활동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이행 역시 어려움을 호소함.
 - 미취학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조건부과제외자에 해당하나 보육시설을 이용할 시에는 조건부수급자에 해당하여 조건부과를 하나 결국은 보육시설 이용을 포기하는 경우도 빈번함

- 취학자녀가 있는 경우도 조건부과하기란 어려움이 있음 저소득으로 학원 등을 이용하지 못하는 수급자의 경우 취학자녀이지만 저학년의 경우 미취학자녀만큼이나 모의 손이 많이 필요한 상태임
- 따라서 미취학·취학 자녀의 양육지원체계를 강화하여 여성가구주들이 자활의욕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둘째, 성인지적 자활사업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임
 -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자활사업 종류를 보면 여성의 경우 간병이나 청소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자활사업 참여하기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음
 - 자활사업 프로그램을 여성의 특성과 욕구, 능력과 적성을 어느 정도 고려하여 다양하게 시행한다면 빈곤여성의 자립자활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임
- 셋째, 수급자의 근로이탈 방지 및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시행중인 자활장려금과 같은 인센티브 제도를 다양화해야 할 것임
 - 여성가구주의 자활사업 참여 유도를 위해 미취학자녀의 경우 양육비 지원을 한다든지 교육급여 외에도 추가로 학원비 지원을 해준다면 여성가구주의 자활사업 참여 비율을 높일 수 있을 것임

□ #9, 중소도시, 시군구

- 개별보장가구에 해당하는 가구에 있어서 친정부모의 집에 거주하는 모자가정으로 배우자와 이혼, 사별, 배우자로부터 유기 된 여성은 포함되어 있으나 부자가정은 개별보장가구에 해당되지 않음
- 여성의 경우 이혼이나 사별 또는 근로능력이 없는 여성세대주가 자녀를 양육할 때 현실적인 어려움이 큰 것은 사실임
 - 그러한 경우 친정의 도움을 받을 수 있거나 친정 부모의 집에 거주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개별

24 2008년 기초보장 모니터링 포럼 IV: 성별영향평가

보장가구의 적용은 좀 더 보완되고 적극적인 제도적 보호임이 분명함

- 그러나 부자가정의 경우 만약 어린 자녀를 양육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근로 활동과 가사·양육의 문제로 현실적인 어려움은 더 클 수도 있으며 (대부분 부자가정의 경우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거나 막노동의 경우 새벽 출근의 경우도 많음) 아동의 복지에도 또 다른 문제가 발생 될 소지가 많음.
 - 이런 경우에 있어 부자가정의 세대주가 본인의 부모의 가정에서 무료임차로 거주하는 경우 부모로부터 양육과 관련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좀 더 안정적으로 소득활동에 참여 할 수 있을 것으로 현실적인 대안을 생각 해 볼 수 있겠지만 이러한 경우에 있어 부모 소유의 주택이라든지 또는 부모 세대와 동일가구에 해당하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음.
- 문제제기 및 대안
- 한국의 정서를 고려 할 때 친정부모의 집에 거주하는 모자가정에 대한 보호 기준의 완화로 이해해 볼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자세대에 있어서는 역사별적인 요인으로 적용되어진다고 생각 됨
 - 부자세대에 있어서도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자녀양육에 있어 적극적인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봄
 - 갑작스런 모자가정과 동일한 기준의 적용이 어렵다면 자녀의 연령의 기준을 설정 한다든지, 또는 무료임대에 대한 사적이전 소득의 부과 기준의 조정, 부양비의 조정 등을 통하여서도 점차적으로 적용 할 수 있으리라 생각 됨.
 - 예를 들어 자신의 부모 집에 거주하는 부자가정의 경우에는 개별보장가구로 인정 하되 부양비를 부양 의무자에 해당하는 부모에 대하여 부양비를 15%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을 것임
- 조건부 수급자의 판정에 있어 근로무능력자 또는 조건부과제외자에 해당하는

기준에 유산이나 사상한 자에 대하여 명시된 기준이 없음.

- 현행 조건부수급자를 결정함에 있어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자는 <근로무능력자>로 판단하며, 미취학 자녀 양육 등을 수행하는 경우 <조건부과제외자>로 판단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그러나 자활사업 참여자가 근로자의 개념 보다는 자활급여로 공공부조 급여의 하나에 해당 한다고 하나 근로기준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유산이나 사산자에 대한 보호휴가를 실시토록 하는 규정이 없음
- 문제제기 및 대안
 -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에서 규정한 보호휴가와 동일한 기준의 보호휴가를 실시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모성 및 임산부에 대한 국가의 강한 보호의사를 표현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봄

□ #4, 광역시, 시군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은 별 문제점은 없으나 지엽적인 문제이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P17~P25까지를 보면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의무자의 부양의무를 부여하는데 있어 아들의 경우 결혼유무에 관계없이 소득과 재산기준을 다 같이 적용하고 있으나 출가한 딸의 경우 재산은 보지 않고 소득만 보고 있어 역차별의 문제가 있으며, 부양비를 부과함에 있어서도 아들의 경우는 40% 출가한 딸의 경우는 15%를 부양하고 있어 양성평등에 다소 어긋나는 점이 있다고 보여짐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10개동에 13명이 있는데 이 중 남자직원이 2명으로 성비 불균형 상태임
- 대안
 - 앞으로의 추세가 자녀는 한 명인 경우가 많고, 상속법에 의하여도 재산분

26 2008년 기초보장 모니터링 포럼 IV: 성별영향평가

배 비율이 아들과 딸이 동일하므로 부양의무 기준의 통일이 필요함.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중 전체적으로 여성이 70%를 점하고 있으므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함.

□ #5, 광역시, 시군구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 가정해체방지를 위한 별도가구 인정 특례 내용상 부자가정은 모자가정에 비해 역차별의 요소가 일부 있음(모자가정은 별도가구 인정특례 항목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별도가구로 인정을 받고 있으나 부자가정은 거의 없는 상태임)
- 현물·현금급여 및 복지서비스 제공시 성별 배려는 거의 없는 상태임
- 남성이 여성 보다 훨씬 불리하다고 판단됨(모자가정을 제외한 경우 전업주부가 일반가정에 비해 월등히 많은 상태임)
- 장애인 및 소년가장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있으나 양성평등을 전제한 정책입안은 거의 없는 상태임

□ #15, 농어촌, 읍면동

- 부양비 부과비율 15%인 부양의무자(2008년 기초생활보장사업 지침 p.23)
- 부양의무자가 출가한 딸(배우자와 이혼, 사별한 딸, 미혼모포함)이거나 출가한 딸(배우자와 이혼, 사별한 딸, 미혼모 포함)에 대한 친정부모 가구의 경우
 - 이 경우는 성별로 부양비 부과 기준을 40%나 15%로 구분하지는 않았지만, 여성자녀의 출가여부를 구분하여 부양비 부과기준을 구분하고 있음
 - 또한, 부양능력의 구분도 출가한 딸의 경우 부양능력과 미약으로만 구분되어 있으며 소득만을 고려하여 부양능력을 구분하도록 되어있어 성별차별적인 요소임

- 사례) 동일연령대의 독거노인 A와 B가 한마을에 거주하고 있음.
 - A의 경우 : 출가한 딸만 3명으로 3가구 모두 부양능력 미약으로 부양비 합산한 경우 A가구의 최저생계비이하로 수급자로 보호받음
 - B의 경우 : 출가한 딸 2명과 기혼아들 1명으로 출가한 딸2명은 부양능력 미약이나 결혼한 아들가구 소득이 180만 원 정도 조사되어 부양능력 있음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받지 못함
- 이런 경우 성별에 관계 없이 똑같이 기혼자이나 남성은 40%, 여성은 15%의 부양비를 부과하여 차별을 받고 있음
- 정책적 제안
- 결혼한 딸이 아닌 결혼한 자녀의 부양비 부과율 15%, 미혼자녀의 부양비 부과율 40% 변경

□ #6, 광역시, 시군구

- 기초생활보장제도 상에서 소득부과, 기초생활보장 급여지원 등에 있어 성별을 구분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주로 자활근로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업무 특성상 구분되는 경우가 있음
- 조건부수급자에게 생계급여에 대한 조건부로 자활사업 참여를 제시하고 있고, 통계는 성별, 연령별로 작성됨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여성이 많은 이유로 여성수급자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선정되고 있으나, 여성에 대한 가중치는 없고, 여성과 남성이 일정비율로 선발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규정도 없음
 - 따라서 여성 친화적 사업 개발 확대가 필요하며, 가사·양육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보완적 사회서비스가 필요함
 - 성별을 고려하여 사업장에 배정하고 있으나 여성근로자와 남성근로자의 요

28 2008년 기초보장 모니터링 포럼 IV: 성별영향평가

- 구를 수렴한 배정이나 근로자의 재취업에 도움이 되도록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한편, 현재 자활근로사업은 주로근로능력의 유무로 구분하고 있으며, 성별을 주요변수로 고려하고 있지는 않음.
- 자활사업 참여자의 임금 역시 자활사업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고, 성별에 따른 임금 차이는 없음.
- 전반적으로 업무수행에 있어서 아직도 조직내에서는 여직원보다는 남직원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함
 - 민원수행에 있어서 여성수급자의 경우에는 상담을 할 때 여직원과 대하기를 더 마음 편하게 생각하고 있으나, 반면에 본인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여직원에게는 욕설 등 언행을 함부로 하는 경향이 강함

□ #16, 농어촌, 시군구

- 보장가구의 범위의 가정해체 방지 등을 위한 별도가구 인정 특례부분이 다소 여성에게 관대하다고 생각함
 - 지침 10~11페이지의 ⑦, ⑧, ⑨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모자가정, 장애인여성에게 대해 개별가구로 보호하여 수급을 주는 것인데, 과거 기초생활보장 제도 탄생 당시 사회통념상이었던 여성에게 유리하게 제정되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물론 부양의무자 기준도 마찬가지로의 경우일 것임
 - 부양의무자 기준은 이미 개정될 것으로 알고 있으나, 가구원 특례는 특례조항을 삭제 또는 남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법 등이 있겠으나, 더 면밀한 조사, 검토한 이후 대안이 제시될 것이 현명할 것이라 생각됨

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정책기획서, 결과보고서에 인적 통계를 성별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는가?

□ #15, 광역시, 시군구

- 정책기획서 및 결과보고서등에서도 마찬가지로 성별을 구분하지는 않음
- 단 모·부자복지사업에서는 모자가정, 부자가정이라는 성별 분리된 통계를 수집·사용하고 있음. 정책기획서, 결과보고서 등에서 인적통계를 성별로 구분하는 경우는 종종 기초생활보장 수혜자중 남녀 장애인 현황이나 독거노인의 남녀비율 근로능력자 중 남녀구분 등 인적통계를 성별로 구분하고 있으나 성별을 구분하여 정책결정은 하지 않고 있음

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여성과 남성의 서로 다른 현실과 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반영하고 있는가?

□ #15, 농어촌(읍면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여성과 남성의 서로 다른 현실과 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반영은 자활사업지침에서 찾아볼 수 있음
- 2008년도 자활사업 안내 지침(p 27)조건부과제외자: ①개별가구 또는 개인의 여건 등으로 자활사업에 참가하기가 곤란한자
 - 미취학자녀, 질병·부상·장애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 또는 치매 등으로 특히 보호가 필요한 가구원을 양육·간병·보호하는 수급자(가구별 1인에 한함)
 - 1세미만의 영아의 경우에는 다른 가구원이 있더라도 모에 대한 조건부과제외 : 이 경우 아동양육에 있어서 부(남성)보다는 모가 더 필요하고 여성의 욕구를 파악하여 반영한 사례

30 2008년 기초보장 모니터링 포럼 IV: 성별영향평가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법령, 지침, 기본계획 등에 특정성별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항목
- 2008년 기초생활보장 법령 및 지침상(p23)부양비 부과 비율
 - 출가한 딸(배우자와 이혼, 사별한 딸, 미혼모포함)이거나 출가한 딸에 대한 친정부모가구의 경우 부양비 15%부과
 - 이 경우는 성별로 부양비 부과 기준을 40%나 15%로 구분하지는 않았지만, 여성자녀의 출가여부를 구분하여 부양비 부과기준을 구분하고 있음
 - 또한, 부양능력의 구분도 출가한 딸의 경우 부양능력과 미약과 없음으로만 구분되어 있으며 소득만을 고려하여 부양능력을 구분하도록 되어있음

마. 정책대안 마련 시 성별을 주요 변수로 고려하는가?

□ #15, 농어촌, 읍면동

- 기초생활보장에 관한 법령이나 지침 등을 지자체에서 대안을 마련하지 않아 성별을 주요변수로 고려하는 경우는 없지만, 시군구의 특수시책 등 기본계획을 수립할 시는 어느 정도 성별을 고려하고 있음
 - 예를 들어 자활사업 중 약손간병사업(여성위주), 집수리사업단(남성위주)등 사업별 성별을 고려하여 사업내용을 계획하고 수행하고 있고, 노인일자리 사업에서도 사업내용을 보면 여성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잠자리사업단(모시 관련 상품만들기)와 숲생태 해설가사업(남성들의 참여유도)를 볼 수 있음

바. 정책홍보 방식에 있어 특정한 성별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정책정보를 접하는데 더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은가?

□ #15, 농어촌, 읍면동

- 읍면단위의 주민들은 정책에 대한 정보를 마을 이장이나 경로당에서 접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대부분 남성보다는 여성이 정책이나 특수시책에 대한 정보를 빨리 접하게 됨
 - 이는 농촌지역의 특성상 남성이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근로(농사일)를 하는 경우가 많아 마을방송을 듣거나 경로당을 이용하는 빈도가 낮기 때문에 정보에 둔함. 이와 같은 이유로 부부가구가 단독가구보다 정보에 접근성이 빠름

□ #13, 농어촌(시군구)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농촌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아직도 여성보다는 남성들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 여성이 남성보다는 더 불리한 점이 약간 있음, 또한 이장들이 남성들로 구성되어 있어 여성보다는 남성 직원들하고 훨씬 친화력이 있음

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제도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 성별 차이가 있을 때 그 원인을 파악하고 있는가?

□ #15, 농어촌(읍면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노인 비율이 높는데 여성의 경우 자녀들의 지원금 외에 매달 정기적인 지원금을 받는 경우가 드물어 기초생활보장 지원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반면, 남성의 경우는 직접적인 근로를 하여 정기적인 수입을 관리해왔기 때문에 기초생활 지원에 대해만족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음